

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공고

한국항공우주연구원(KARI)은 항공우주 과학기술 영역의 새로운 탐구, 기술 선도,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.

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기여해주실 분을 비상임감사로 모시고자 합니다.

□ 공모직위 및 임기

- 공모직위 : 비상임감사 / 1인
- 임 기 : 임용일로부터 3년, 연임 가능

□ 응모자격

-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분
-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
- 과학기술발전 및 감사업무에 대한 비전과 식견을 갖춘 분
- 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관」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분

※ 별첨. 결격사유 참조

□ 제출서류

- 신청서(소정 양식) 1부
- 이력서(소정 양식) 1부
-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(소정 양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소정 양식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소정 양식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

※ 제출양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(www.kari.re.kr)에서 내려 받아 작성

□ 서류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4. 1(수) ~ 2026. 4. 10(금), 15:00
 - ※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(대리인 제출 가능/온라인팩스 접수 불가)
 - ※ 등기우편 접수 시 우편 겹봉의 발신자(지원자) 성명은 미기재 가능
 - ※ 방문접수 시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 불가
- 제출처 : (34133)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-84,
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팀 감사 선임 담당자 앞(042-860-2156)

□ 심사방법

- 심사방법 :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실시

□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로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서류는 파기됩니다.
- 서류심사 기준이 되는 주요서류(신청서, 이력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) 미비자 및 자격요건을 미충족할 경우,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자 접수 결과, 지원자 수가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때 기 제출된 서류는 재공고 시 제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.
- 임원추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,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채용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팀(042-860-215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4. 1.

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원추천심사위원회

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관」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(선임직이사는 제외한다)
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